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 09. 09(화)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8. 09.22(월)
- 다. 상정일자 : 2008. 09.22(월)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재무과장 신종해)

- 가. 평창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실과명이 변경되어 개정된 실과 소명에 의거 요율표 내용을 수정하고,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신고에 관한 권한이 시도에서시군으로 이양되어 관련 수수료 조항을 신설 추가하고자 함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진영)

- 가. 업무이관 7개 항목, 실과명 변경 17개 항목 총 24개 항목 수정
(안 제3조①항 관련)

연번	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고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역도시과	민원봉사과	업무이관
2	공연장 등록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과명변경
3	공연장 등록변경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과명변경
4	유통관련업 등록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과명변경
5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과명변경
6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과명변경

연번	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고
7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과명변경
8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신청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과명변경
9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문화관광과	관광경제과	과명변경
10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문화관광과	관광경제과	과명변경
1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등) 신고	기획감사실	관광경제과	업무이관
12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기획감사실	관광경제과	업무이관
13	공장등록 증명	기획감사실	관광경제과	업무이관
14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	기획감사실	관광경제과	업무이관
15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스포츠사업단	문화체육과	업무이관
16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등록	스포츠사업단	문화체육과	업무이관
17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건설과	건설방재과	과명변경
18	수산물가공업 등록	축산과	농축산과	과명변경
19	어업신고	축산과	농축산과	과명변경
20	어업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축산과	농축산과	과명변경
21	어업신고 폐지	축산과	농축산과	과명변경
22	내수면 어업면허(복합)	축산과	농축산과	과명변경
23	내수면어업 허가	축산과	농축산과	과명변경
2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	축산과	농축산과	과명변경

4. 검토 결과

가. 본 개정조례안은 제153회 임시회에서 일부개정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8.08.01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업무이관 7개항목, 부서명 변경 17개항목 등 총 24개 항목을조직개편 이후 부서별로 조정하고, 일부 수수료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민원봉사과로, 석유판매업등록등 지역경제 관련 업무를 관광경제과로 하고, 체육시설업등록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며, 2007.08.03 법률 제8591호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 등록이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

다. 업무의 성격 및 행정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적정하며 조례안에 특이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